

광주지방법원 2018. 10. 10 선고 2017가단50679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

피고1. A

2. B

3. C

피고 2, 3은 미성년자이므로,

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, 모 E

4. F

5. G

피고 4, 5는 미성년자이므로,

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, 모 I

변론 종결2018. 9. 19.

판결 선고2018. 10. 10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/1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B, C, F, G은 각 2/11 지분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5. 3. 20. 접수 제73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A, B, C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3. 피고 F, G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나경선

별지